07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가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 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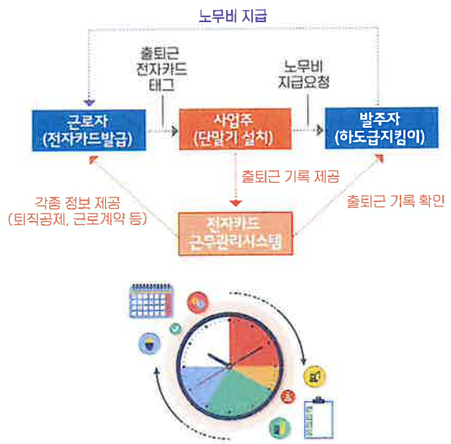

08

하도급부조리는 신고·상담 전화주세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 및 기타 하도급 관련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전화 02-2133-3600
팩스 02-768-8844
홈페이지 eungdapso.seoul.go.kr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 검색 →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채널 추가 → 신고서 접수

민간발주 공사에서의 근로자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공공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22

민간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국토교통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1577-8221

하도급 법률 상담센터

공사비 미지급, 부당한 감액·위탁취소, 불법·불공정하도급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해 전문 변호사인 하도급 호민관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2133-3008
팩스 02-768-8844

기관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연번	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시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대금체불)	2133-3600
	불법하도급신고센터 (건설혁신과)	2133-8730
2	도시기반시설본부	3708-2374
3	한강사업본부	3780-0723
4	상수도사업본부	3146-1645
5	종로구	2148-1206
6	중 구	3396-4406
7	용산구	2199-6293
8	성동구	2286-5053
9	광진구	450-7083
10	동대문구	2127-4088
11	중랑구	2094-0217
12	성북구	2241-2156
13	강북구	901-6024
14	도봉구	2091-2055
15	노원구	2116-3061
16	은평구	351-6073
17	서대문구	330-1016
18	마포구	3153-8142
19	양천구	2620-3032
20	강서구	2600-6102
21	구로구	860-3499
22	금천구	2627-1175
23	영등포구	2670-3033
24	동작구	820-1471
25	관악구	879-5105
26	서초구	2155-6136
27	강남구	3423-5133
28	송파구	2147-2077
29	강동구	3425-5045
30	서울교통공사	6311-9945
3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435-0484
32	서울시설공단	2290-6232
33	서울주택도시공사	3410-7538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카카오톡 채널 접속

☑ 계약서미작성
☑ 장비대금체불
☑ 임금체불

서울특별시

01

건설공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련기관에 등록
- 종합건설업 : 시·도
- 전문건설업 : 시·군·구

예외) 1건의 공사가 5천만원 미만인 종합공사 또는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건설업**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업(業)

■ **건설(기술)용역업**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

건설업		건설(기술)용역업	
업종	관련법	업종	관련법
• 종합·전문 공사업 • 해외건설업 • 주택건설사업 • 환경전문 공사업	• 건설산업 기본법 • 해외건설 촉진법 • 주택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엔지니어링 사업 • 건축사업 • 건설기술 용역사업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 건축사법 • 건설기술 진흥법

02

건설공사란 이런 것

건설공사란

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전문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도급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불법 하도급을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청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대금을 체불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품납품으로 위장한 하도급은 불법

건설공사를 물품납품 등의 형태로 변경하여 하도급 하는 것은 저가 또는 불공정 하도급을 위한 편법입니다.

※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것은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03

불법 하도급 영원히 퇴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9조

부실공사와 대금체불의 원인

불법유형	내 용	제 재
일괄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30% 이하 과징금,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문공사 수급인의 하도급 제한	전문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하도급 (공공2021.1.1.시행 민간2022.1.1.시행)	
무자격 하도급	공사내용에 상응하지 않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서면승낙 등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시 하도급	
무면허 시공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특약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요구 금지 - 보험료 미지급 특약 - 각종 비용, 하자담보책임 전가 특약 -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특약 -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특약 등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04

건설기계임대차 체불 예방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계약서 작성은 필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제재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도 필수!

건설사업자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재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1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06

하도급지킴이가 지켜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

- 2020. 11. 1. 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사용
- 시설공사 및 S/W용역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교육자료는 조달청 시스템 참조(http://www.g2b.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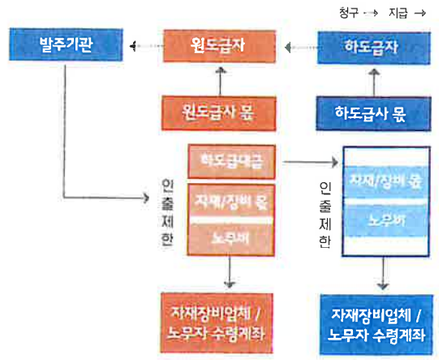

- 원·하도급업체에서 본인 몫과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청구
- 인출제한으로 인해 원·하도급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출 가능
-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여비, 노무비는 청구 시 등록계좌로 이체

05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 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 서면 교부는 의무!

건설업체는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재규정

근로기준법 제114조 / 기간제법 제24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근로자 임금체불 안돼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재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여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